

2020년 청렴옴부즈만 제1차 회의 개최 결과

□ 일시(장소): 2020. 2. 21.(금), 공단 본사 5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청렴옴부즈만 위원 3명, 청렴감사실장, 직원 등 5명
(안병욱 위원, 김성도 위원, 조복래 위원)

□ 내 용: 청렴감사실 주요 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 및 내규(지침)개정 토의 등

순번	현황보고	비 고
1	① '19년 청렴 옴부즈만 운영실적 및 '20년 운영계획 ○ 2019년도 청렴옴부즈만 활동실적 보고 ▷ 총 4회 활동(정기회의 2회, 특별현장 방문 2회) ○ 2020년도 활동계획 보고 ▷ 회의정례화, 특별현장 방문 수시화, 활동실적 피드백 실시 등 ② '19년 청렴도 · 부패시책 평가 보고 ○ 2019년도 종합청렴도 측정 평가 결과 보고 ≡ '3등급' ○ 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결과 보고 ≡ '3등급' ▷ 결과 총평 및 향후 개선계획 보고 ③ '20년 청렴감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강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 추진 ▷ 연말연시, 설 · 추석명절, 선거, 휴가철 등 시기별 기강감찰 추진 ○ 재정 건정성 확립을 위한 예방감사 내실화 ≡ '19년 추진실적(210건) ▷ 적정기초 금액 산정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 ▷ 주요정책, 계약업무 등에 대한 「일상감사」 운영 ▷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한 「시공감사」 운영 ○ 부실 · 과오 발생 방지를 위한 「특정검사제」 실시 ▷ 계약심사 결과 부실우려 사업 선정후 모니터링, 공정률90%에서 특정검사 실시 ○ 청렴도 강화를 위한 「청렴해피콜」 실시 ▷ 공단발주 공사 · 용역 · 물품 업체중 무작위 선정 및 해피콜 실시	현황 보고
2	① 공익신고자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개정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제19조 제2항 신설 ② 부패신고 접수 ·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운영지침 개정 ○ 부패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 운영지침 제7조 제7항 신설	토의 과제

순번	청렴 옴부즈만 청렴감사실 업무보고 관련 당부사항	비 고
1	① 청렴감사실 업무현황 보고 관련 당부사항 □ 재정 건전성 확립 위한 예방감사 내실화와 관련 (조복래) 감사실에서 예방감사 등을 엄격하게 하면 공단의 업무전반에 창의성 등이 줄어들 우려가 있음. 준공시점에 한하여 예산절감한 부분은 시설물 전체 주기를 볼 때 관리비용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 하지 않음. (안병욱) 조복래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함. 시설물의 전체 관리기간을 볼 때 특허나, 신공법 등에 대한 비용부분은 초기에 많이 들 수가 있어도 전체적인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나 기간을 생각할 때 더 절감되는 경우가 있음. 단순한 준공시점에 대한 절감으로 당시 직원 또는 담당자의 실적으로 인정받고 공적을 챙기고, 그 뒤 유지보수에 어려움이냐 많은 비용에 의한 비효율적인 유지보수 방식은 지양해야 함이 옳은 방향임. (김성도) 앞의 두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함. 조직의 창의성이나 발전을 위하여 역설적이게도 청렴감사실의 역할이나 업무가 더욱더 늘거나 하면 오히려 조직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봄. 조직의 창의성과 발전을 위하여 감사실의 역할이나 활동은 제한적인 것이 좋을 것, 따라서 예방감사 강화쪽은 지양하는 것이 맞음. (청렴감사실장 답변) 여러 위원 분들의 좋은 의견과 당부 말씀을 잘 들었음. 위원분들의 의견대로 조직의 창의성 및 발전을 해지치 않은 범위에서 감사실의 활동을 추진하고, 단순 실적쌓기 위주의 적발이나 지적은 지양하도록 하겠음.	

순번	청렴 읍부즈만 토의과제 관련 제안 사항	비 고
1	② 공익신고자 및 부패신고 접수 보호자 관련 규정 개정 토의 ☐ 2019. 10. 17. 개정 · 시행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개정사항 반영 ☐ 현행 내규(지침상)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고접수기간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관련법상 개정내용(최초 접수기간 60일, 연장접수기간 30일) 반영여부 등 토론 (안병욱) 실제 지방자치단체나 유관단체의 경우 상위법 및 국가기관 등 상위단체의 법규나 규정에 대하여 다르게 시행하기 어려움. 상위법과 다른 내규 · 지침 등은 중국에는 상위법에 맞게 되어 있고, 만일 상위법과 상이한 내규 · 지침 결정시 현안업무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우려 있음. 결국 국민권익위법에 명시된 기간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상위법보다 접수기간 등을 짧게 정한다하더라도 그게 더 청렴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김성도) 규정의 통일화 및 추후 해석상 문제발생의 우려예방을 위해서도 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임. (조복래) 다른 위원님과 같은 의견임. 접수기간을 짧게한다고 해서 그게 옳다고 볼 수도 없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조사기간은 상위법에 정한 기간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에도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짐. (청렴감사실장 답변)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상위법과 달리 정하여도 중국에는 상위법과의 해석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고, 기간을 더욱 짧게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실효성도 의문인 것은 사실임. 상위법에 따라 접수기간 및 보완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겠음. ※ 부패신고 접수자 보호기간 운영지침상의 접수기간과 보완기관도 동일하게 개정처리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	

2020년 청렴 옴부즈만 제1차 회의 진행 사진



청렴감사실 업무현황 보고



업무현황 보고 관련 당부



토의과제 자유토론



토의과제 관련 총평